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상임임원(경영총괄이사) 공개모집

"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"인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 임원을 모십니다.

2026년 3월 11일

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1 대상 및 주요 업무

❍ 대상 및 인원: 상임임원(경영총괄이사) 1명

❍ 임기: 2년

※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정관 제14조(임원의 임기)에 따름

❍ 주요 직무: 기획조정(중장기 계획・예산・법무), 경영지원(인사・총무・회계・인재개발・조직문화), 디지털 혁신(안전AI・DX융합), 산업안전보건인적자원개발(ISC) 등 소관 업무 관장

2 응모 자격

포괄적 자격요건			•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•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사람 •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•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
필수요건			• 「대한산업안전협회 정관」 제15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
구체적 자격요건	학력 기준		• 박사학위 소지자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•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
	자격증 기준		•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
	경력 기준	공무원	•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•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	민간경력	•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•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실적 기준		• 산업재해예방, 노동행정 발전, 산업안전보건 기술, 산업안전보건 교육홍보 등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,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사람

※ 관련분야: 노동 및 산업관련 행정, 경영, 조직·인사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
※ 비 고 1: 구체적 자격요건은 학력기준·자격증기준·경력기준 및 실적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2: 민간경력 인정 범위는 산하단체, 대학(전문대학 포함), 연구소, 민간기업(비상장 포함), 시민단체, 프리랜서 등 개인 활동 경력을 말함

3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

❍ 서류제출: 2026. 3. 11.(수) ~ 2026. 3. 18.(수) 18:00까지(8일간)

❍ 제출 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제출처: (우)08289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,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부
※ 방문 접수: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, 2026. 3. 18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※ 우편 접수: 2026. 3. 18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4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

❍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자기진단서 각 1부
※ 상기 제출서류는 협회 홈페이지(www.safety.or.kr)에서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

❍ 증빙자료 각 1부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졸업증명서(대학 및 대학원) 또는 학위증(해당자에 한함)
- 지원서 등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※ 필요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※ 해당 경력, 학력 또는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

5 심사 방법

❍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
- 제1차: 서류심사(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)
- 제2차: 면접심사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등 개별 통지)

※ 심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개하지 않음
※ 면접심사 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
6 결격사유(정관 제15조)

○ 피성년후견인
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○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○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○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○ 파면 또는 징계로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징계로 해임 또는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징계로 정직 또는 강등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 기타

❍ 제출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❍ 지원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예정임

❍ 우리 협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「공직자윤리법」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, 제18조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) 및 시행령 제34조(취업승인)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(취업승인신청)하여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

※ 취업승인심사 결과가 불승인일 경우 임원추천이 취소됨

❍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부(02-860-7164)로 문의 또는 협회 홈페이지(www.safety.or.kr)를 참조 바람